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2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7.06.05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상위법인 「지하수법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산금 부과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가산금 조항 삭제(안 제14조)

○ 조례안 제14조(가산금)

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
▶ 상위법인 「지하수법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가산금 부과는 적법하지 않음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하수법」 제30조의2, 제30조의3, 제41조 등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07. 4. 20 ~ 5. 10 (20일간) ▶ 제출된 의견없음

라. 기 타 : 시 환경보전과-6431(2007.3.29) 지하수이용부담금 가산금 관련 검토사항 알림.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 (가산금) 구청장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	<삭 제>